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가 2006. 6. 15 : 사천시장 제출

나 2006. 6. 15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30호)

다 2006. 6. 27 :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총무과장 엄정기)

가 제안 이유

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“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정원”을 우리시 정원의 총수에 규정하며, 정·현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직렬을 조정하기 위함.

나 주요내용

■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정원 보강

- 6급 1명, 8급 2명

■ 직렬조정

-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
  - 기능직 3명(8급 1, 9급 1, 10급 1)삭감 → 일반직 8급 3명 증원
- 정원조정 내역
  - 정원의 총수 : 853명 → 856명(3명 증)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837명 → 840명(안 제2조제1호)

다 관계법령

■ 지방자치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군호)

■ 개정조례안은 2005 . 8 .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06 . 1. 20 행정자치부로부터 토지관련 업무 정원 보강 승인에 따라 6급(행정+지적) 1명과 8급(행정+지적)2명을 정원 조정하여 사천시 정원의 총수를 853명에서 85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37명에서 840명으로 3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써

■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함으로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가 실질적 이득을 가지지 못하도록

■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확인, 부동산 거래 실태조사, 개발부담금 산정, 전산자료 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요구되며,

■ 기능직의 일반직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능직 정원 3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 3명을 증원하려는 개정 조례안의 별표 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